

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2일
신청인	성명(법인명)		
	주소 (전화번호)		
어선	어선번호	어선의 명칭	
	증서유효기간	년 월 일부터	년 월 일까지
연장요청기간	년 월 일부터	년 월 일까지	
연장사유			

「어선법 시행규칙」 제67제2항에 따라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기 위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귀하
한 국 선 급 회 장

첨부서류	1. 어선이 검사받을 장소에 있지 않아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: 해당 어선의 현재의 위치를 나타내는 서류 2. 새로운 어선검사증서를 어선에 갖추어 둘 수 없는 경우: 현재 갖추고 있는 어선검사증서	수수료 대행 검사기관의 수수료 기준에 따름
----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유의사항

□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: 5년

□ 어선검사증서 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

- 해당 어선이 정기검사를 받을 장소에 있지 않아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유효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.
- 해당 어선이 외국에서 정기검사를 받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새로운 어선검사증서를 즉시 발급할 수 없거나 어선에 갖추어 둘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개월의 범위에서 그 유효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.

□ 그 밖의 유의사항

- 연장된 기간 내에 해당 어선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장소에 도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

처리절차

